
2025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2024. 12.



교 육 부
교육복지늘봄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

목차

I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1.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2
	2. 학생 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7
	3.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	11
	4.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13
II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1.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17
	2.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20
	3.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22
	4. 장애학생 인권 강화	24
III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1.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29
	2.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32
	3.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35
	4. 순회교육 지원 강화	37
	5.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39
	6.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42
	7. 초등 늘봄학교 및 방과후·돌봄 지원체계 강화	49
	8.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54
	9. 특수학교(급) 안전 강화	59
	10.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61
IV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1.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체계 강화	65
	2.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	66
V	2025년도 특수교육 관련 행사 및 기타 행정사항	
	1. 특수교육 관련 행사	69
	2. 기타 행정 사항	71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비전 및 주요 과제>

비전 모두가 존중받는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 목표**
-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
 - 특수교육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등·평생교육 격차 완화

추진 전략		주요 과제
1	학생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2 학생 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3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2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3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2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교육 지원 확대 3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4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체계 강화 2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

I.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1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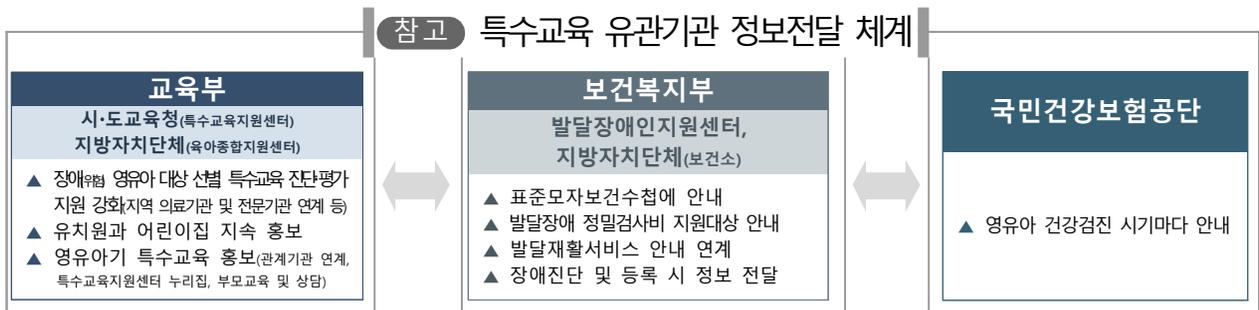
추진목적

▶ 영유아단계부터 장애특성, 교육 요구에 따른 체계적인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 조기발견 및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 동법 「시행령」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 제26조(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 유아교육법 제13조(교육과정 등) ▲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중복 수급에 따른 양육수당 수급권의 상실)

1) 영유아기 조기발견 · 진단평가 지원체계 강화

- 2차 장애 예방과 발달 촉진을 위한 조기중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관) 간 협업 및 특수교육 진단·평가 체계 확대
 - 장애(위험) 영유아 대상 선별검사 및 특수교육 진단·평가 지원 강화
 - ※ 유아특수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확대 ('21) 274명 → ('24) 372명, 지역복지기관, 의료기관 연계 등
 - 보호자의 동의하에 지역 내 병원, 보건소 및 기타 관계기관 등과 연계하여 장애 위험* 및 장애영유아 실태 파악
 - * 발달 지연이 있거나 장애가 의심되어 특별한 지원과 조기 개입이 필요한 영유아
- 교육-복지-의료체계 연계로 영유아단계부터 특수교육 정보전달 체계 강화
 - 관계기관 연계 시스템 구축, 영유아기 특수교육 홍보 리플릿, 부모교육 및 상담 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등 적극 홍보



- 장애(위험)자녀 양육정보 제공 확대 및 부모 양육 자료 개발·보급
 - 보호자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장애자녀 부모지원 종합시스템과 학부모 지원센터 누리집 연계

참고 장애(위험)자녀 양육정보 제공 안내

- 장애자녀 부모 지원 종합시스템(온맘)(www.nise.go.kr/onmam, 국립특수교육원)
- 전국학부모지원센터(www.parents.go.kr,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장애(위험)자녀 양육 정보제공 확대를 위한 멀티미디어 클립형 콘텐츠 8종('24., 국립특수교육원)

2) 특수교육대상영유아 교육 지원 내실화

-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장애유형·발달단계별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교재·교구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참고 교수·학습지원 자료 안내

- 에듀에이블(www.eduable.net, 국립특수교육원) 교수·학습 지원 탑재 자료 활용
- i-누리-누리과정 포털 사이트(www.i-nuri.go.kr, 육아정책연구소) 나눔누리 자료 활용

-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지원을 위해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학급 증설

- ※ 학기 중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영아는 수업일수 150일 미만이라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 특수교육대상영아는 보건복지부의 양육수당 지원 가능(「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20. 8. 7. 시행)

- 의료기관, 복지시설 및 가정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영아 순회교육 제공
- 영아기 발달특성을 고려한 개별화가족지원계획(IFSP) 수립·실행으로 특수교육 대상영아 가족지원 강화

참고 장애영아 양육 및 교육지원 관련 자료

- 장애영유아 양육 가이드북 6종 ('16., 국립특수교육원)
- 장애영아용 교사용 지침서('17., 교육부·충청남도교육청)
- 장애영아 교육활동 자료집(0~2세) 12종 ('20., 국립특수교육원)
- 장애영아학급 운영 가이드북·사례집('24., 교육부·경상북도교육청)

- 유치원 특수학급* 및 통합유치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통합교육 거점기관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유치원 특수학급) ('24) 1,623개 → ('27) 1,837개 (통합유치원) ('24) 8개 → ('27) 15개

-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위한 **통합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 유치원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간 협력을 강화*하여 **통합교육 성과 제고**
- * 통합교육 협의체 구성(특수교육대상유아를 위한 정보공유, 애로사항 협의 및 문제해결 모색 등)
- ※ 유치원 통합교육 연구학교·정다운학교 운영 확대: ('21) 10교 → ('24) 43교 (33교↑)

참고 유치원 통합교육 관련 자료

- 통합유치원 운영 모델('18., 국립특수교육원)
- 유치원 통합교육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연구('21., 국립특수교육원)
-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자료(유아용)('21., 국립특수교육원)
- 장애유아 통합교육 교수·학습자료('22., 국립특수교육원)
-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자료(유아용)('24., 국립특수교육원)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방과후 및 돌봄 참여를 위한 지원 강화**
 - **통합교육 중심의 방과후과정 운영 여건 개선**
 - ※ 특수교육대상유아 방과후과정 참여 시 통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시도교육청 차원의 지원 노력
 - 돌봄 참여를 위한 지원인력* 지원 확대
 - * 시도교육청 여건 및 특수학교(급) 돌봄 운영시간 고려하여 다양한 인력 지원
- **교육-보육기관 간 교육 격차 단계적 해소를 위해 특수교육 지원 강화**
 - 장애영유아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연수 기회 확대
 - * (유치원) 특수교사, 통합학급교원 (어린이집) 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
 - ※ 영아기 특수교육 및 가족지원, 장애영유아 유·보·초 연계 이음교육 관련 등
 -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대상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시범사업 운영
 - ※ 장애영유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에 관한 어린이집 컨설팅 등 지원

참고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지원강화 시범사업

진단·평가	· 조기발견 및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을 위한 진단·평가 실시
치료지원	· 교육요건을 갖춘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대상 맞춤형 치료지원 제공 · 시범사업 운영
통학비 지원	· 교육요건을 갖춘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및 보호자 중 원거리 통학자에게 통학비 지원 시범사업 운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제2항,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제2항

3)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이음교육 지원 강화

- 가정-유치원, 어린이집-유치원,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간 연계를 강화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유치원·초등학교 이음교육 지원

참고 특수교육대상자 이음교육 관련 자료

- 특수교육대상학생 초등학교 입학적응지원 길라잡이('17., 경상남도교육청)
- 장애유아 통합교육 교수·학습자료집: 초등학교 입학초기 적응 활동 지원자료('22., 국립특수교육원)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초등학교 전이 과정 어려움 해소를 통해 초등학교를 적령에 취학할 수 있도록 지원
- 일반·특수교사·학부모 간 특수교육대상유아 관련 정보공유, 초등학교 방문 등 초등학교 입학 전 및 입학 초기 프로그램 운영
- ※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대상영유아 조기발견 및 전환지원 역량 강화(신규-원격연수)

참고 특수교육대상유아 초등학교 입학적응 프로그램

- 입학 전 적응 지원 프로그램
 - ▶ 입학 예정 특수교육대상유아 부모 대상 입학 전 사전상담, 입학적응지원 설명회 개최 등
 - ▶ 입학 전 초등학교 사전 방문 계획 수립·추진
 - ※ 특수교육대상유아 대상 초등학교 체험 프로그램, 보호자 대상 교사 상담 및 선·후배 부모 간담회 등 운영
- 입학 초기 적응지원 프로그램
 - ▶ 교육과정 내 초등학교 학교적응 프로그램 운영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취학유예·면제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등·하교 및 순회교육 가능성, 보호자 의견 등 고려
 - ※ 취학의무 유예 후에는 재취학 시까지 특수교육 지원 보류
-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및 유치원 특수학급 소속 특수교육대상유아의 학적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등록 및 관리
 - ※ 다만, 나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에서는 이전의 전자기록생산 시스템을 사용하여 처리 (「2024 유치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21쪽 참조)
 - ※ 유치원 나이스 사용 관련 「유아 나이스 업무안내서」 참고

✓ 시도교육청 협력 사항

- ① 특수교육이 필요한 영유아가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취학 절차 등 적극 홍보
- ② 특수교육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특수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상시 홍보
- ③ 장애영유아 조기발견 및 특수교육 지원 강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장애영유아 조기발견 체계 구축
 - 장애영유아 부모를 위한 양육 정보 제공 및 교육자료 보급
 -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담당 특수교육교원, 통합교육 담당교원 및 교육요건을 갖춘 어린이집 소속 직원 대상 연수 실시
 -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학급 확대
 - 시도교육청에서 개발한 장애영아학급 자료 활용
 - ※ 참고: 장애영아학급 운영 도움자료 ('24.,충북특수교육원)
 -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위한 통합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 ※ 전일제 특수학급 운영 지양, 전일제 특수학급 운영 시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원 합의 후 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등 지원방안 마련
- ④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 및 이음교육 지원
 - 의무교육 보장 및 선택권 확대를 위한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 확충
 - 시도교육청에서 개발한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위한 이음교육 자료 적극 활용
 - ※ 참고: 초등학교 입학 전 학부모를 위한 특수교육 가이드북 ('23.,충북특수교육원)
 - 「미리미리 미리학교」학부모 대상 초등학교 입학적응 프로그램(에듀잇슈) ('23.,충청남도교육청)
 - 특수교육대상유아 이음교육 운영 현황 조사('25.1월)
- 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특수교육 만족도 조사('25.11월)

2

학생 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추진목적

- ▶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및 운영 내실화
- ▶ 지역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 강화로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지원 확대

▲ 「특수교육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동법 「시행령」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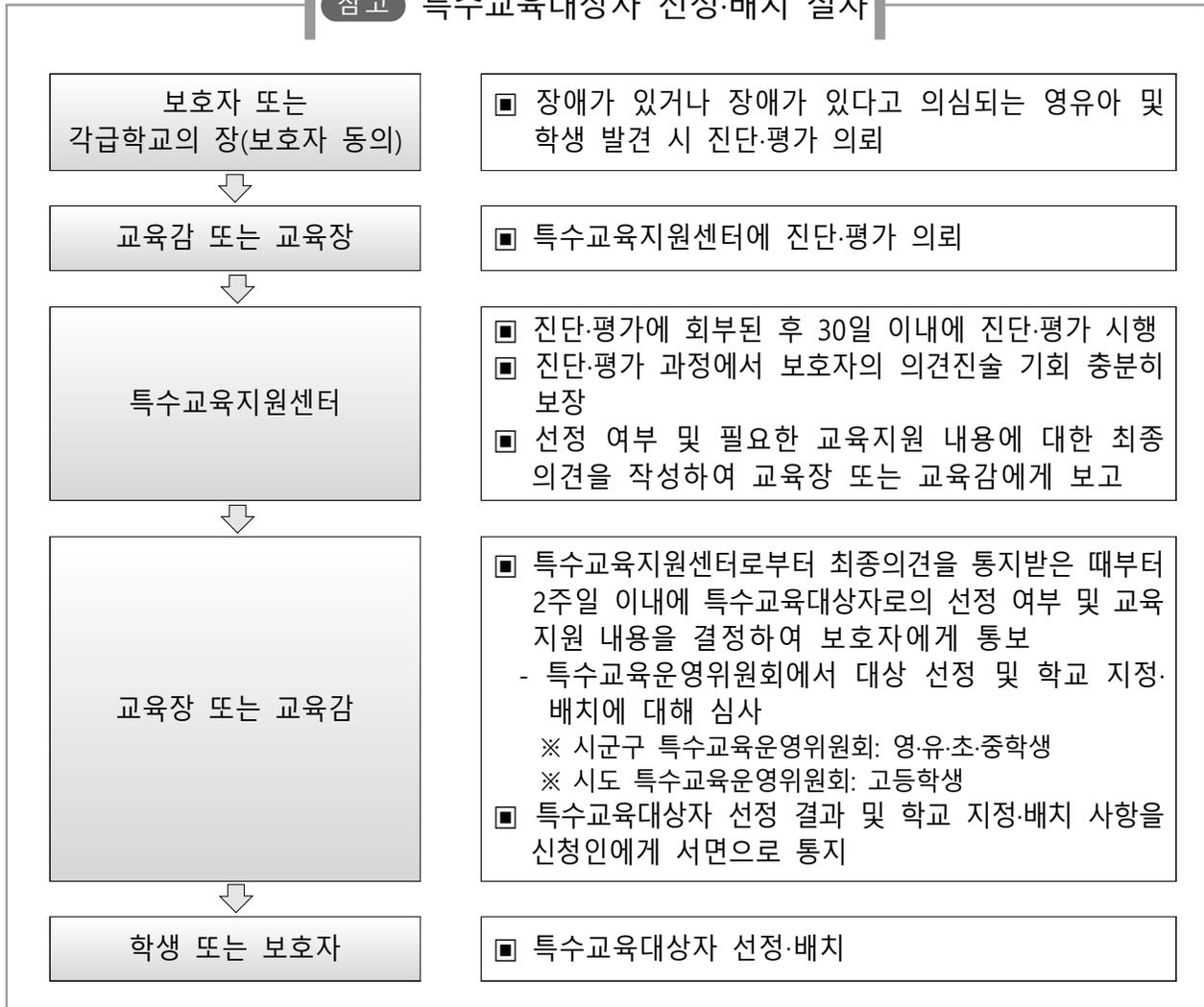
1) 진단·평가 전문성 강화

- 장애(위험)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 대상 진단·평가 의뢰 전후(희망 또는 필요시) 상담 제공
 - 선정·배치 절차, 관내 특수교육기관 정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가족지원 등 특수교육 전반에 관한 정보 제공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등 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전문 의료 및 협력 기관 지정 확대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보호자 상담 및 면담·관찰 등을 통해 진단·평가 대상자에 대한 교육적 진단 실시
- 진단·평가 담당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장애유형별 진단·평가도구* 활용 및 심리검사 결과분석 등 연수** 운영
 - * 【국립특수교육원】 기초학습능력검사(NISE - B·ACT), 적응행동검사(NISE - K·ABS), 정서행동검사(NISE - K·EBS) 등
 - ** 【국립특수교육원】 기초학습능력검사 실시 방법의 이해, 적응행동검사 바로 알기, 정서행동검사 바로 알기

2)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절차 준수

- 취학의무 유예·면제 및 재취학, 유예기간 연장, 특수교육대상학생 재선정 및 영역 변경,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취소, 재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심사 등을 거쳐 결정
- 법령에 규정한 재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실시

참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



3) 특수교육대상학생 정보관리 체계 마련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 이력 등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
 - *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선정·배치 및 유예·면제 등 관련 정보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으로 연계·관리
 -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 의견수렴, 법령 정비 및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 분석 등

4)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지역 연계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의료·교육·보육·직업 관련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병원, 보건소, 어린이집, 복지관, 직업교육 관계기관 및 산업체 등

- 교육지원청 내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특정 업무지원 센터(Wee센터 등)와 협업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효율성 강화
- 지역 내 관계기관 간 협력·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전문인력* 상시 지원 기반 마련
 - * 행동중재, 인권, 상담, 가족지원, 재활, 수어, 점자, 보조공학기기, 보건·의료 등
- 관계부처(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가족지원서비스 및 정보제공 연계 기반 마련
 - * 교육부-보건복지부,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 가족지원사업 수행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 관계부처(기관) 간 협의회 운영 및 주기적 정보공유·연계를 통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가족 역량 강화 사업 추진

5) 특수교육지원센터 인프라 확충

- 교육 현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전담인력 확충
 - 지역사회 기반 체계적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설비 확충 및 특수교육 전공 전담장학사 등 배치 확대
 -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간 역할 분담·분산 등 기능 구조화 또는 시도특수교육원 설치·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 대상 실무중심 연수* 강화 및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 * 업무 관련 필수 영역(진단평가 검사도구 이해·결과 해석 및 교육적 활용, 보조공학기기, 행동중재, 교육과정 등) 연수 이수, 외부 전문가 연계 교육 지원 등
 - ** 승진가산점 부여, 전보 우대, 학습휴가, 유연근무제 인정, 연수지원 등 전문성 신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 기회 우선 제공 등
- 지역 여건과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수요자 중심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로 특성화하고 전문적 교육 지원 강화
 - * (24.)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55개
 - 장애 정도와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평가팀* 구성·운영, 학습자료 제공 및 수업 활동 지원 강화
 - *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의료 및 보조공학 분야 전문가, 담당 교원,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 심리상담사 등

✓ 시도교육청 협력 사항

- 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내실화 및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 전문성 강화
 - 진단·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외에 보호자, 담임교사로부터 과도한 구비서류 요구 금지
 - ※ 「장애영유아 조기발견 및 적합배치 가이드북」(17., 경상남도교육청) 활용
- ② 시도교육청별 관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수요, 역할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설과 인력 배치 기준 마련
- ③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및 행정지원인력 확보 노력
 - * 전문상담사, 행동지원전문가, 청능훈련사, 한국수어통역사, 점역·교정사/보행지도사, 사회복지사 등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 전담부서 담당 인력 확충 등 특수교육 지원 강화
- ④ 모든 특수교육 순회교사는 필수적으로 수업 실시
- ⑤ 경력 교원 배치 및 근무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관련 자체 규정 마련
- ⑥ 일반학교 교직원 대상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홍보 및 특수교육 관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 ⑦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기관 대상 장애인학대,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및 결과 보고(‘25. 하반기)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제10호(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급))

3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

추진목적

- ▶ 특수학교(급) 다양화·특성화를 통해 특수교육기관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 선택권 확대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제21조(통합교육)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2조(교지), 제4조(교육 관련 시설의 종류 및 기준)

1) 특수학교(급) 확충

-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통한 과밀학급 감축 및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특수교육대상학생과 보호자의 불편 해소
 - 시도교육청, 특수학교(급) 수요를 고려한 중장기 신·증설 계획 수립

2) 특수학교 다양화·특성화

- 연령·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유·초·중·고·전공과 과정이 함께 있는 기존 특수학교를 소규모 및 단일과정으로 다양화 추진
 - 특수학교 신설 시 기존 학교와 교육과정 조정을 통해 학교급별로 운영하는 특수학교를 단계적으로 확대

참고 소규모·단일과정 특수학교 설립 사례

▲대구이름고등학교('22. 개교, 고)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24. 개교, 고) ▲전북 동부권 특수학교('26. 개교 예정, 중·고·전공과)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27. 개교 예정, 중·고)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27. 개교 예정, 중·고) ▲전주보림학교('27. 개교 예정, 중·고·전공과) ▲전남 온미래학교('29. 개교 예정, 직업)

- 대학·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특수학교 운영모델 확산
 -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직업교육, 예술 및 체육 등 분야별 중점 특수학교 운영 확대
 - ※ 지역사회 개방, 복합공간 조성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타 기관과의 교류 활동 활성화

참고 분야별 중점 특수학교 추진 사례

▲대구예아람학교('21. 개교, 예술) ▲대구이름고등학교('22. 개교, 직업)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24. 개교, 직업) ▲대전서남부학교('26. 개교 예정, 직업) ▲전북 동부권 특수학교('26. 개교 예정, 직업)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27. 개교 예정, 체육)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27. 개교 예정, 예술) ▲울산 제3공립 특수학교('28. 개교 예정, 체육·예술·직업)

3)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 유치원 또는 초·중·고등학교를 설립할 경우, 특수교육대상학생 수요를 고려하여 특수학급 우선 설치 계획 수립
 - 장애유형별(중도중복장애, 시·청각장애 등) 또는 특정 분야별 특성화 특수학급 등 학급 운영 다양화
- 장애학생의 교육·치료·돌봄 병행을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내 학급 운영 등 특수교육 지원 강화
 -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수도권(3), 충남권(1), 경남권(1)
 - ※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전남권(2), 강원권(2), 경북권(2), 충북권(1), 전북권(1), 제주권(1)

✔ 시도교육청 협력 사항

- ① 시도교육청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대한 교육수요와 학급당 학생 수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확충 중장기계획 수립
 - 특수학교 신설 시, 기존 학교의 교육과정 조정 등을 통해 학교급별 또는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 확대 방안 모색
 - 택지개발 예정지에 학교 용지 확보, 폐교부지 활용 등 부지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 ②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신설 시, 특수교육 수요를 고려한 특수학급 설치 계획 수립

4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추진목적

- ▶ 특수교육교원 배치 개선 및 증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보장
- ▶ 특수교육교원 연수 확대 등 전문성 신장으로 특수교육의 성과 제고

▲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항제5호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 동법 「시행령」 제5조(교원의 자질 향상), 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1) 특수교육교원 배치 개선 및 증원

- 사회적 변화, 교육 현장의 요구* 등 교육수요를 고려한 특수교사 양성 과정 및 자격제도 개선 추진
 - * 시·청각장애교육, 협력교수, 행동중재 관련 전문성 제고 등
- 시·청각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특수 및 일반학교)의 교원과 학생 간 원활한 소통과 교육력 제고를 위해 관련 자격*을 소지한 특수교사 우선 배치 및 전보 유예 권장
 - * 점역·교정사/보행지도사, 한국수어통역사(교육용 수어 능력 평가·인증 교원 포함) 등
- 공간 부족 등으로 특수학급 신·증설이 불가능하여 설치 기준 초과 학급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경우, 특수교사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협력교사* 추가 배치
 - * 정규 특수교사,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시간제 교사, 강사 등
- 특수학급이 3학급 이상 설치된 일반학교에 특수교사 중 보직교사 배치 및 신규 개설되는 특수학급에 경력 교원 배치 권장
- 교과 중점 학교(예술, 진로와 직업 등)에 해당 전공 특수교사 우선 배치
- 도서 또는 읍·면 지역 소재 특수학교(급)에 정교사(1·2급) 우선 배치

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 특수교사의 교수 능력 향상과 학생과의 의사소통 강화를 위해 점자, 수어 등 특수교육 관련 국가 공인 자격(점역사, 수어통역사, 보행지도사 등) 취득 지원

- 특수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운영
 - 시도교육청이나 학교 단위 특수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조직·운영 하여 교실 수업 개선 및 연구하는 학교문화 조성
 - 자율적 특수교육 수업연구회 지원을 강화하여 학교 및 교사 간 정보·자료 공유 활성화 및 연구 성과 확산 등에 기여
- 특수교육대상학생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확대
 - 교과별 교수·학습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 ※ 【국립특수교육원】 ▲유초·중등 특수교사 수업 전문성 강화 ▲일상생활 활동 ▲에듀테크(인공지능·코딩교육 등) ▲통합체육 ▲발명교육 등
 - 학교급별 통합교육 및 학급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 ※ 【국립특수교육원】 ▲유초·중등학교 교사 및 특수교사의 통합교육, 행동중재 지원 ▲정다운학교 운영교 협력교수 ▲행동중재 업무 담당자 전문성 지원
 -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교육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 ※ 【국립특수교육원】 ▲시각장애 교직원 K-에듀파인 ▲청각장애학생 담당교원 교육용 수어 지도 (26.1.) ▲중도중복장애·피질(뇌성)시각장애·건강장애 학생 교육 지원 ▲의료지원 인력, 병원학교 교사 등

3)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확대 및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강화
 -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23.9.1. 공포·시행),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개정(24.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해설서(25.3. 개정·배포 예정), 장애학생 행동중재 가이드라인, 특수교육대상자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프로그램(25.3. 배포 예정) 참조
- 산림복지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사 마음 건강 회복 연수 확대
 - * 숲체원(산림교육센터),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시설에서 운영
 - ※ 【한국산림복지진흥원-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사를 위한 산림교육 체험' 동계 시범 운영, 하계 확대 운영



시도교육청 협력 사항

- ①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연수 '재활복지 미전환 치료 교사 자격연수 과정'에 기간제 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이 '치료교육'인 기간제 교사가 '재활복지'로 표시과목 변경을 희망할 경우, 특수학교 교사 재활복지 자격 전환 연수에 참여 안내
- ②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추진
- ③ 특수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해 신규교사 멘토링 지원 및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 ④ '25년 특수교사 정원 관리 및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원 임용·관리 철저
 - ※ 정원 외 기간제 교원 임용 현황조사 제출('25. 4월, 10월)

II.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1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추진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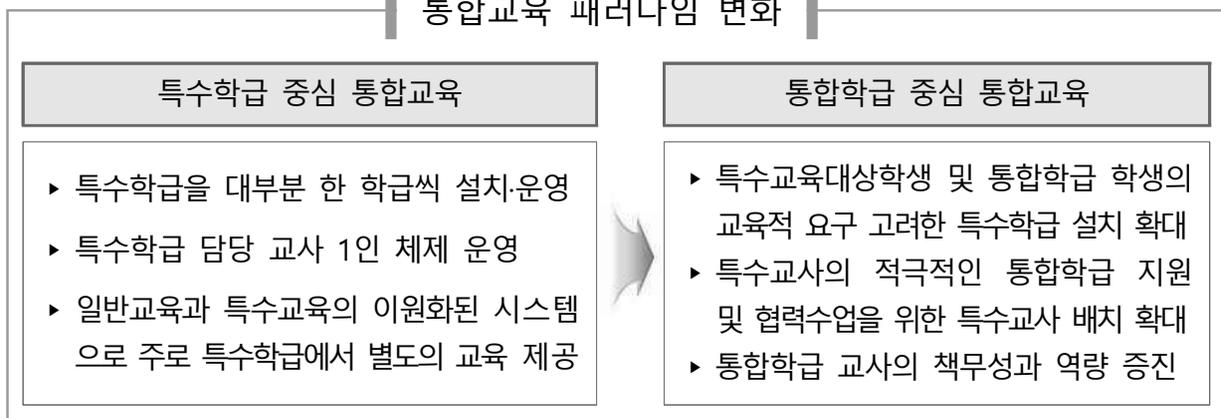
- ▶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통합교육 내실화 도모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국정과제 84】(국가교육 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 통합교육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모든 교육정책 추진 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검토 목록 마 및 적용**
 - ※ (서울시교육청) '정책 배리어프리'라는 '장벽 없는 정책'을 통해 교육청 구성원 모두 공존 교육의 비전을 공유하고, 사업 시행 전 특수학교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요건 검토
- 기존 특수교사 주도의 통합교육에서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책무성을 확대·강화** 하는 **통합교육 패러다임 변화** 유도

통합교육 패러다임 변화



- 장애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등 통합학급의 보편적 학습설계 적용을 위해 **통합학급 학생 수 감축 조정***

* 학생의 장애 정도와 특성,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합학급의 학생 수를 1~3명 감축 (교육부고시 제2023-34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2023.9.1. 시행))

- 특수교육 관련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통합교육 인력풀 구성을 위해 특수교육 관련 관계기관, 대학 등과 상시 협조 체제를 구성하고 협의체 운영
 -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단위 '통합교육지원단' 구성·운영

참고 통합교육지원단 구성·역할

- (위원 구성) 지역 내 인력풀을 활용하여 특수교육 전문가*로 위원 구성
 - * 대학교수, 특수교사, 통합학급 담당교원,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행동지원전문가, 보호자, 학교관리자, 치료사, 교육전문직 등('24. 188개단, 2,221명)
- (역할) 통합교육 관련 컨설팅·상담, 특수교육 교원연수, 통합교육 관련 연구 프로젝트 수행, 통합교육 관련 교육자료 개발 등
 -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상담 및 진단·평가 기능, 보조공학기기 제공 등 학습·정보 지원 기능과 연계 운영 가능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 적응력과 학력 신장을 위한 멘토링제* 운영
 - * 특수교육 관련 전공 대학생(멘토)과 초·중·고교 특수교육대상학생(멘티)을 1:1로 연결하여 멘티 학생의 학교생활(교과 수업, 학교 행사, 체험학습, 기타 생활 적응 등)을 지원
- 특수학급 교육활동 및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특수교사 양성 대학 연계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등) 등 교육활동 지원 추진
-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에 통합교육지원실 설치('24. 435개교)를 확대하여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순회교육 등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2)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

- 초·중·고등학생과 교원의 장애인식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학교장애인식지수' 및 연계프로그램 보급('25.~)
 - 내실있는 장애이해교육 정책 기초 자료 마련을 위해 통합교육 실시학교 적용 및 학교 과정별 장애인식 수준 추이 분석('25.~)
 - ※ '학교장애인식지수' 적용 및 활용 방안은 별도 안내 예정

【 '학교장애인식지수' 기본 구성 내용 】

구분	내용		
대상	• 일반학교 초등학생(3~6학년)용, 중·고등학생용, 교사용 각 5종		
구성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교사용
	• (지표) 관점, 지식, 정서, 실천 • (문항) 6가지 상황 34문항	• (지표) 관점, 지식, 정서, 실천 • (문항) 7가지 상황 41문항	• (지표) 관점, 지식, 실천 • (문항) 6가지 상황 35문항
활용	1	2	3
	장애인식수준 진단	지표별 수준 확인	결과 활용
	온라인 검사 시스템* 활용 대상자별 인식지수 진단 *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 탑재('25년(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 ACES ▪ (중) MIDD ▪ (하) RASE 	지표별 인식 수준 결과에 따라 연계프로그램 적용 ※ 예) '실천' 지수 낮을 경우, '장애·비장애 상호작용 프로그램 적용' 등

※ 연계 프로그램: 학교장애인식지수 지표별·학교과정별 40개 쇼츠 콘텐츠

✔ 시도교육청 협력 사항

- ① 시도교육청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청별 또는 권역별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 ②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 적응력 및 학력 신장을 위한 멘토링제, 대학 연계 지원 확대
- ③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순회교육 등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실 설치·운영
- ④ 통합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학급 정원 감축 조정 방안 마련
- ⑤ 통합교육 실시학교(초·중·고) 대상 '학교장애인식지수' 적용 안내 및 참여 독려(별도 안내 예정)
- 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특수교사 배치 시 지원 확대

2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추진목적

- 교원의 통합교육 연수 확대를 통해 통합교육에 대한 현장 역량 강화
-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일반교육교원과 특수교육교원의 협력체계 강화로 통합교육 활성화 도모

▲ 「특수교육법」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제21조(통합교육) ▲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 【국정과제 84】(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1)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일반학교 교원의 직무연수·자격연수 과정에 통합교육 관련 교과목* 확대·편성 및 일반학교 관리자와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 강화
 - * 장애이해교육(장애인학대 예방·신고교육 포함)을 특수교육 관련 필수 교과(1과목)로 편성하여 매년 관계기관에 관련 내용 안내 및 권고
 - ※ (근거)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2019-179호)
- (교(원)장 연수) 협력적 통합교육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특수(통합)교육 관련 연수 3시간 이상 이수*
 - * 시도교육청 평가지표(3-5) 포함 예정. 단, 법정 의무교육(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등)은 연수 실적에 미포함
 - ※ 2026년 통합교육 실시 학교 교(원)감은 2025년 시범 적용 예정
-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15시간 이수 권장, 특히 순회교육대상자와 건강장애학생 담당 통합학급 교사 연수 강화
 - ※ 통합학급 담당교사는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교사,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이수자 우선 배치 권장
- (특수학급 교사) 학교과정별·장애유형별 협력교수 및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추진
- (예비교사) 교육실습에 통합학급 운영 등 통합교육 관련 실습* 포함 권장
 - * 보편적 학습설계, 협력교수, 장애공감프로그램 운영 등

2) 특수-일반교사의 협력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실문화 조성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모형* 확산을 위한 '정다운학교' 확대, 시도교육청별 컨설팅 및 협력교사 배치 등 지원 강화

* 학교과정별 보편적 학습설계, 문화예술체육, 장애유형별 협력교수 모형 등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우수사례 발굴·확산

참고 통합교육 협력 관련 자료

- 초·중등학교 통합교육 실행 가이드북('17., 교육부·세종시교육청)
- 통합교육 연구학교 정다운학교 운영 사례 콘텐츠(에듀넷 티-클리어 등)

- 학교 구성원 간 통합교육 공감대 형성·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청이나 학교 단위에서 통합교육연구회 조직·운영 활성화

※ 【국립특수교육원】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간 협력수업 역량 강화(초등)

- 보편적 학습설계 및 장애공감 교육활동 등 통합교육 운영 사례에 대한 통합교육 핵심교원 연수 운영

- 유치원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간의 협업(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정보 공유, 협력교수 등)을 강화하여 통합교육 성과 제고

✔ 시도교육청 협력 사항

- ① 일반학교 교(원)장이 연 3시간 이상 특수교육 관련 집합 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연수 과정(워크숍 포함) 지원
 - 교직원 대상 연수 및 교원 자격연수 시, '장애이해교육'에 '장애인교원 이해'에 관한 내용 포함
 - ※ 「교육부-함께하는 장애인교원 노동조합 단체 협약」 제34조, 제35조
- ② 통합학급 담당교사에 대한 직무연수 확대 및 학년 초 장애이해 관련 워크숍 실시
- ③ 통합학급 담당교사 배치 시,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연수 이수자 등 우선 배치
- ④ 예비교사 교육실습에 통합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시도교육(지원)청 담당부서 및 해당 학교에 안내
- ⑤ 통합교육 관련 연구 자료, '정다운학교' 운영계획 및 우수사례* 활용 안내
 - * 에듀넷 티-클리어(<http://www.edunet.net>) > 연구 > 연구학교 > 연구학교자료
- ⑥ '정다운학교' 운영교 확대 및 통합학급 지원을 위한 특수교사 배치
- ⑦ 통합교육 연구학교, 통합교육연구회(전문적학습공동체 등) 운영 지원 및 성과 공유
 - ※ 2025 통합교육 연구학교 성과공유회('25.12. 예정) 참여 안내 및 독려
- ⑧ 초등교사-특수교사 통합교육 협력수업 직무연수 과정에 '정다운학교' 운영교의 담당자(초등교사 및 특수교사)가 동반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 ⑨ 2025 통합교육 핵심교원 연수(주관: 충청남도교육청) 참여 안내 및 독려(별도 안내 예정)

3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추진목적

- ▶ 장애이해교육 내실화를 통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일상적 장애공감 문화 조성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차별금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동법 「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 모든 유·초·중·고등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 ※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직원은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 교과용 도서 연계 장애인식개선 수업사례 발굴·확산
 - 유·초·중·고 일반교사 대상, 교과용 도서(유치원의 경우 누리과정)와 연계한 다양한 장애이해수업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공모전 운영
- 장애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된 장애이해교육 운영을 위해 장애학생이 포함된 '장애인식개선교육지원위원회*' 구성 권장
 - * 제19회 아동총회 결의문 채택 사항으로 시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조례 마련

2)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 장애인의 날(4.20.) '특별기획방송*'을 활용한 장애이해교육 지속 실시
 - * 유(유아용 3D 애니메이션), 초(대한민국 1교시), 중·고(장애이해교육 드라마)
 - ※ 초·중·고교 특별기획방송 활용 수업 시 2차시 분량의 시간 확보 권장
- 장애이해교육 전문강사를 활용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및 장애인식개선 주제 문화예술 공연(장애예술인(단체) 초청공연 등) 지원
-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용한 체험형 무장애 장애이해체험관* 설치
 - * 무장애 시설, 제품, 재활보조 공학기기 등을 경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체험관
 - ※ 시도교육청별 조성된 안전체험관 또는 특수교육원을 활용한 체험관 설치 확대

3) 장애인식개선교육 확대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대상을 **각급학교 직원에서 학부모까지 확대**
 - 학교 자체 행사* 등을 활용해 전문강사 초청, 우수 콘텐츠 활용, 문화예술공연** 및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학부모 교육 실시**
 - *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학교 공개의 날, 학부모 연수 등
 - ** (예) 장애인식개선 뮤지컬 '우리(Wiri) 너의 이야기를 들려줘'(23., 경기도교육청)

참고 학부모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자료

- 국립특수교육원의 장애공감 자료 활용(국립특수교육원 누리집 > 에듀에이블 > 장애공감)
-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유튜브 장애인식개선 관련 콘텐츠 활용
- 장애인 공연단 문화공연 행사 콘텐츠 등(예: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뽀꼬 아 뽀꼬' 음악회 등)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https://humanrights.go.kr>) 교재·교육자료실 내 인권 자료 활용 등

-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의 일환으로 **장애인식개선 학생동아리* 운영 확대 및 우수사례 발굴**
 - * 장애인식개선을 목적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학교 구성원, 지역민 대상 캠페인, 콘텐츠 제작 등)을 학생 주도로 기획·운영하는 동아리

4) 캠페인 및 홍보 다양화

- 전문가 콘텐츠 개발, 학생·교직원 공모전 및 백일장 등을 통한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공감 콘텐츠의 다양화**
- 인터넷, 방송 및 인쇄물 등을 활용한 **장애공감문화 캠페인 지속 실시**

✔ 시도교육청 협력 사항

- ① 각급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연 2회 이상 장애이해(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
- ② 각급학교에 '교과연계 장애이해수업 우수사례 공모전(교육부·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및 '제3회 전국 장애공감 포스터 공모전(국립특수교육원)' 안내 및 참여 독려
- ③ 장애인식개선교육조례 제정 및 장애인식개선교육지원위원회 구성·운영 권장
- ④ 각급학교에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을 학부모까지 확대하여 시행하도록 안내
- ⑤ 장애인식개선 학생동아리 확대 및 체험형 무장애 장애이해체험관 운영

4

장애학생 인권 강화

추진목적

- ▶ 장애학생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지원단 운영 및 관계기관 협력 강화
-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성)교육 내실화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제3항,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제3항, 제13조의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차별금지), 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1) 장애학생 인권 지원 내실화

○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신속 대응 및 감지 체계 강화

-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www.nise.go.kr/onmap) 운영
 - * 사용자 위치 기반(GPS) 기관 정보(법률, 상담, 교육, 의료 등) 제공 및 ‘장애학생 인권침해 신고센터’ 운영(국립특수교육원·17개 시도교육청 공동 운영)
-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 내 ‘장애학생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장애학생 인권침해 관련 사안 접수 및 조치
-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 내 지원기관 정보 등록* 및 사용자 안내·홍보
 - * 시도교육청 기관별 계정으로 지원기관 직접 등록 및 현행화
- 학생, 보호자 및 교직원 등이 직접 인권침해 사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특수 학교 내 인권침해 신고함 설치·운영

○ 장애학생 인권실태 점검 내실화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 실태조사 매년 실시

참고 2025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개요

- (목적) 장애학생 인권침해 관련 경험 및 인식 등을 조사하여 인권침해 예방·대응 지원
-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내용) 2024년 2학기부터 2025년 1학기 동안 학교생활 내 인권침해 경험 및 인식 등
 - ※ 조사표는 3개 영역(학교폭력, 학습권리, 학교생활)으로 구성
- (대상) 특수교육대상학생(초등학교 4학년~전공과) 및 보호자, 교원
- (시행) 17개 시도교육감(주관: 인천광역시교육청)

- 관계부처(청) 주관, 장애학생 인권 관련 실태 점검 협조

참고 관계부처 장애학생 인권실태 점검 시 협조

- (보건복지부)
 - ▶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에 시설 내 특수교육대상학생 면담조사 포함
 - ▶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 (병무청) 정기 복무점검 시, 특수학교 사회복지요원 면담조사

○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담당 인력 확충

- 장애학생 행동지원과 인권보호 여건 개선을 위해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

* 전문상담교사 자격이 있는 특수교사 중 전직 희망자 우선 배치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운영 및 역할 강화

○ 분야별 전문가 집단으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 및 역할 강화

참고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 (구성)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하여 최소 8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체적 역할 명시
 - ▶ (필수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장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연구사)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 ▲특수학교(급) 교장(감) 또는 수석교사 ▲경찰서 성폭력 담당자 등 ▲장애학생 보호자 ▲학교폭력·성교육 전문가 ▲상담 전문가
 - ▶ (기타위원) ▲법률 전문가 ▲사회복지사 ▲청소년인권전문가 ▲의료전문가 등
- (역할) 현장지원(정기/특별), 교육 및 연수, 협의회 운영, 우수사례 발굴·홍보 등

- (직무연수)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업무담당자 연수 실시

※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신규)

○ 현장지원(정기지원, 특별지원) 시,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연수와 가·피해 학생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지원(개별 맞춤 지원, 지역 전문기관 연계 등) 확대를 위한 현장 지원 실시

○ 매월 1회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활동(정기·특별지원) 결과 보고*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전월 현장지원 결과 제출(매월 5일까지) → 시도교육청 결과 승인 처리(매월 15일까지) → 국립특수교육원 시도별 취합·점검(매월 30일까지) → 교육부 보고(매월)

○ 장애학생 관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또는 학교폭력 전담 기구 사안 조사 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위원 또는 특수교육전문가가 자문위원(또는 참고인)으로 참여

-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협의체 구축, 정기간담회 실시 등)하여 기관 간 정보공유 등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 활동 강화**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해바라기아동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 협의체 구성 시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www.nise.go.kr/onmap)' 활용

3) 장애인권교육 강화

-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 유·초·중등학교의 관리자·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공감문화 확산 연수를 집중 확대하여 **교내 장애학생 인권보호 풍토 조성**
-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의 인권 의식**(자기권리인식, 자기보호 등) **함양 및 학교(성)폭력 예방**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장애학생 학부모 대상 인권보호 역량 강화 연수 운영**

참고 장애인권 및 장애이해교육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https://humanrights.go.kr>) **교재·교육자료실: 별별이야기 등**
-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www.eduable.net) **장애공감: 인권 교육 자료, 장애공감 교육자료 및 장애공감 공모전**
 -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 등 인권 관련 자료
 - ▶ 장애학생 및 가족의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자료(시각, 청각, 지체, 지적, 정서·학습장애)

-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칙에 **장애학생 인권보호 조항 신설·강화**
-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직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프로그램 개발**(^{24.})·**보급**(^{25.})



시도교육청 협력 사항

- ① 2025년 시도교육청 인권침해 예방·대응 계획 수립 및 제출(25.1월)
- ② 시도교육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계획 수립 및 제출(25.3월)
- ③ ‘2025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실시 및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 교원·보호자 대상 실태조사 안내 및 안내 영상(콘텐츠) 상영 등 홍보 강화
- ④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특수학교 학교폭력예방교육(언어폭력·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포함) 실시
 - 시도교육청 국가 시책 추진 평가 점검 지표* 항목에 포함
 - * 3. 함께학교 (3-2. 학교폭력 근절 노력)
 - ※ 「2025년 시도교육청 평가 실행계획 안내」 참고
- ⑤ 인권침해 중대 사안 발생 시, 시도교육청을 통해 국립특수교육원으로 즉시 보고(공문)
- ⑥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신고)’ 운영
 -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 홍보 및 지역 관계기관 현행화 추진(수시)
- ⑦ 각급학교에서 장애학생 대상 학대 및 성범죄 발생 시 기관장 또는 교직원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및 관할청 학교폭력 담당과에 보고
 - 학교(성)폭력 발생 시 사안 처리는 학교폭력 담당과, 피해학생 인권보호 및 2차 피해예방은 인권지원단에서 지원하도록 조치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장애학생이 피해 또는 가해학생인 경우, 특수교육 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제2항)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59조의4에 따라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대상 장애인학대 범죄 경력 조회 연 1회 이상 확인·점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 ⑧ 일반학교의 장은 학교(성)폭력 예방 교육 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교육 계획을 포함

Ⅲ.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1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추진목적

- ▶ 에듀테크 교육환경 조성 및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보급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디지털 핵심 역량 강화

▲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7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제10조(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
 ▲ 동법 「시행령」 제2조(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

1) 에듀테크 중심의 미래교육 환경 조성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맞춤형 학습 지원 및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AI교육 중심의 **활용 환경*** 구축 및 관련 기기** 보급 확대
 - * 스마트패드, 노트북 등 AI교육을 위한 기기 구비, AI스피커 등 AI활용 교육 환경 조성 등
 - ** SW교육 교구(코딩봇, 모듈형 교구 등), AI형 스마트 기기 등
- 의사소통, 정서안정 및 흥미유발 등 장애학생의 일상생활과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AI 기반 지능형 프로그램 및 기기 활용 확대**
 - * AI기반 챗봇, 음성 인식 스피커 등(커뮤니케이션 스킬): 딥러닝 알고리즘 기반으로 대화 문맥 및 상황인지분석이 가능하며, 일상생활 장면(장소, 대상)별 의사소통 훈련 시 활용
 - ※ (예) 학교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을 위해 PBS학습 AI챗봇 활용('24., 대구교육청)
- AI 활용·융합교육 거점 역할을 하는 'AI 교육 선도 특수학교(급)' 지정·운영을 통해 미래교육 모델 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 * AI 교육 전문가 양성, AI 교육 컨설팅 및 성과 관리 실시, AI 융합 특수교육 교육과정 등 특수교육 현장에 활용될 수 있는 AI 기술 적용 사례 발굴 등
 - ※ ('24) AI 교육 중심학교: 8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 13교
- 장애학생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일상생활 속 디지털 문해력 강화를 위한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 * 무인정보단말기 활용 콘텐츠(요식업, 교통, 공공기관, 유통점포, 문화생활시설, 의료기관), 기본 교육과정 일상생활 활동 VR 콘텐츠(신체활동, 여가활동, 자립생활)
 - ※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www.eduable.net) > 에듀테크' 자료 활용

○ 특수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및 선도학교·교원을 활용한 컨설팅** 추진

- * ▲메타버스, 실감형 콘텐츠 활용하기 ▲SW·AI교육 수업하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자료 만들기 ▲ AI 활용 특수교육 수업하기 ▲AI 기반 에듀테크 활용하기 등
- ** ▲장애유형별 디지털 복 활용하기 ▲교육과정과 SW·AI 융합하기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 등

참고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콘텐츠'

• 국립특수교육 누리집(nise.go.kr) > 에듀에이블(eduable.net) > 멀티미디어북, 에듀테크

멀티미디어북	· 기본 및 공통 교육과정 교과* 기반 영상·애니메이션 등 멀티미디어 교육콘텐츠 *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진로와 직업,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
소프트웨어 교육자료	· SW 코딩 및 인공지능 기술 기반으로 메이커융합 및 시융합교육 지원 자료
실감형(AR/VR) 교육자료	· 기본 교육과정 교과* 기반, 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 교육콘텐츠 * 과학, 일상생활(신체·여가) 활동
무인정보단말기 교육자료	· 교과 연계, 다양한 업종*의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활용 교육콘텐츠 * 공공기관, 유통점포, 문화생활시설, 의료기관, 요식업, 교통

2)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지원 플랫폼 운영

○ 온·오프라인 융합수업 등 특수교육 수업 혁신을 위해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지원 플랫폼(열린배움터)* 운영

- * 기본·공통 교육과정 기반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여 학생 수준별 학습설계 및 학생 출석, 온라인 수업 진도 등 학습관리 운영, 실시간 화상수업 서비스 제공, 의사소통 역량 향상을 위한 그림 상징 기능 등 제공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지원 플랫폼(열린배움터)

열린배움터 메인화면

열린배움터 소개
(기능 및 주요 서비스)

사용자별 기능 안내
(교사, 학생, 학부모)

3) 에듀테크 신기술 체험 확대

- 체험·실습 중심의 SW·AI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지역·민간 인프라* 활용 및 방학 중 장애학생 SW·AI캠프 등 운영
 - * 지역 SW교육 전문기관 방문,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장애학생 대상 SW대회 개최 등
-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VR·AR 콘텐츠, AI 로봇 등 에듀테크 기반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상상 체험버스*', '실감형 체험교실' 활용
 - * 버스와 트럭의 구조를 변경해 가상·증강현실(VR·AR), 인공지능(AI), 댄스로봇, 홀로그램, 가상 현실 모션 플랫폼을 이용한 어트랙션, 확장현실(XR) 등 첨단기기를 탑재한 이동형 체험공간

✔ 시도교육청 협력 사항

- ①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장애학생 디지털 리터러시 및 SW·AI교육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 반영
 - * (예)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내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환경 개선, 정보화기기 보급 등
- ② 특수교사의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연구회 지원, SW·AI 교육 컨설팅 및 정보화대회 개최 등 시도교육청별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 디지털 북 활용,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AI 융합 교육 방법 등
 - ※ 시도교육청은 관할지역 내 국립특수학교도 포함하여 특수학교(급) 컨설팅 실시
- ③ 지역 내 유관 및 전문기관 간 연계를 통한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해 장애학생 디지털 역량 강화
- ④ 장애유형별 디지털 리터러시 및 실감형 콘텐츠, SW·AI 교육 관련 자료 개발 및 지원

2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추진목적

- ▶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 지원 확대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호 일부개정 포함),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4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3 (학점제의 운영 등)

1)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 학교의 특성 및 여건, 교원·보호자·학생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학교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
 - * 【초1~4, 중1, 고1】 기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는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학점)를 감축하여 일상생활 활동 편성 가능
 - * 【초5~6, 중2~3, 고2~3】 기본 교육과정은 교과(군)별 30%, 공통 교육과정은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 증감 가능
(※ 다만 체육, 예술(음악, 미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 감축 불가)
- 고등학교 과정에 교과중점학교(체육, 예술, 진로와 직업 등) 운영* 지원
 - * 【고1】 (기본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 학점의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중점교과로 편성하도록 권장하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함, (선택 중심 교육과정) 자율 이수 학점의 30% 이상을 해당 교과(군)의 과목으로 편성하도록 권장
 - * 【고2~3】 (기본 교육과정)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중점 교과로 편성 가능

2) 통합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확대

- 통합학급 및 특수학급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장애특성 및 교육적 요구 등을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통합교육용 교수·학습자료 등 활용
-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학교교육과정 계획 수립 시 통합교육 계획 포함 및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 특수교사 참여 권장

3)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활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 2025학년도 적용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초3~4, 중·고 134책) 신규 보급
 - ※ 【초5~6, 중2~3, 고2~3】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활용
- 통합교육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급을 통한 교육과정적 통합 지원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1~2학년군 국어, 수학, 통합교과 워크북 형태 교수·학습 자료(서책, 전자저작물) 보급*
 - * 국어(초1~2) 2책 2종, 수학(초1~2) 2책 2종, 통합교과(초1~2) 2책 2종, 총 6책 6종

4)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후속 지원

-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용도서 활용 지원
- 시도교육청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과용도서 활용,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등에 대한 교원 대상 연수 및 컨설팅 등 실시
-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학교(급) 우수 운영 사례 발굴·확산
-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 활용을 위한 교원 연수 실시
 - ※ 【국립특수교육원】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이해 ▲ 특수교육대상학생 고교학점제 이해 ▲기본 교육과정 초등학교 1~2학년군 등 교과 교수·학습 전문성 강화 ▲국어, 수학 교과 교수·학습지도 역량 강화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위한 놀이 중심 교육과정 등

5) 고교학점제 현장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 특수학교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역 및 학교 특성을 고려한 현장 중심 지원 확대
 -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및 운영 모델학교**를 통해 장애특성을 고려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지원
 - * 국립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특수학교
 - ** ('25.) 대전(1교), 제주(2교)

- 지역 및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정착되도록 시도교육청 단위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찾아가는 컨설팅, 학부모 연수* 등 교육과정 운영 지원
 - * 고교학점제 기본 이해는 교육부 제작 자료(예: 교육TV 등)를 활용하고,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및 특수교육대상학생 별도 적용 사항을 중점으로 안내
-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용 자료 활용*** 및 **담당교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 *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안내서(1종),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학교공간 조성 방안(1종), 특수교육대상학생 고교학점제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 도움 자료(2종)
 - ** 특수학교(급) 고교학점제 이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고교학점제 운영 안내 등
- 학생 특성 및 학교 여건에 따른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강화
 - 장애 특성과 학생의 진로·흥미를 고려한 학점제 기반의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 시도교육청 협력 사항

- ①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 시도교육청은 관내 국립특수학교도 포함하여 특수학교(급) 컨설팅 실시, 특수학교(급)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장애학생 교육활동 실천 우수사례 공모전(국립특수교육원)' 안내 및 참여 독려
- ②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배치된 일반학교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 특수교사 참여 확대 권장
- ③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수·학습자료 지원
- ④ 특정 교과(체육, 예술 등)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중점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⑤ 시도교육청 단위 특수교육 교육과정관련 연구·연수 및 현장 지원 활성화
- ⑥ 2022 개정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개발에 따른 현장적합성 검토(검토학교, 교사연구회 운영 등) 협조
- ⑦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한 시도교육청 지원 계획 수립·제출('25.3월)
 -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한 '시도교육청 고교학점제 현장지원단' 구성·운영계획 포함

추진목적

-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특수교육 성과 제고

▲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 ▲ 동법 「시행규칙」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직업교육 담당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매 학년 시작 2주 이내 구성
 - ※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해서는 인근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급) 등과 협력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지원
-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적사항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일반교육교원과 보호자 참여가 보장되도록 충분한 안내와 의견수렴 절차 준수
 - ※ 학교별·학년별 개별화교육 관련 부모교육 강화
-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는 학기마다 실시
-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 결과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통합학급 교사와 공유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전학 또는 상급학교 진학 시, 전출학교는 전입학교로 14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송부

2) 다양한 학교 구성원과 함께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 특수교사,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지원인력 등을 포함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개별화교육 제공
- 교육과정과 교과 특성, 학생의 장애 정도에 따라 학생집단을 편성하여 개별화 교육에 활용

3)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 실행 방안 모색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활용한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 정비 및 안내자료 개발·보급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행동특성 등을 고려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시행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계 방안 모색
 - ※ 발달장애학생의 행동 특성이 나타나는 원인을 면밀히 파악·분석하여 구체적 지원 방법이 포함되도록 개별화교육 개선 요망('19.10.23., 국가인권위원회)

✔ 시도교육청 협력 사항

- ①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해 인근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급) 등과 협력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도록 지원 및 관리 강화
- ② 일반학교의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 시, 일반교육교원의 참여와 역할 확대 방안 강구
- ③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보호자 참여 보장 및 의견수렴 절차 준수
- ④ 각급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현황 점검 및 강화
- ⑤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과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관련 연수·컨설팅 내실화
- ⑥ 시도교육청별 개별화교육계획 관련 연구회 운영 지원, 학교급별·교과별 개별화교육 우수사례 확산
- ⑦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안내
 - 행동중재가 필요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행동중재 지원 사항 포함
 -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의료지원 사항 포함

* 나이스 개별화교육계획관리 내 '제공서비스' 항목에 '의료적 지원' 항목 추가 기능 개선
- ⑧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이용하여 처리·안내

4

순회교육 지원 강화

추진목적

- ▶ 순회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정도와 교육 요구 등에 대한 진단·평가 및 적절한 교육 지원으로 개별 학생의 학습권 보장

▲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25조(순회교육 등)

1) 순회교육 대상과 지원 범위

-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실시
-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순회교사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활용하여 순회교육의 지원 범위와 내용 결정
 - 순회교육대상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 가능
 - ※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 심의 결과('20.7.14., 규제개혁법무담당관-5681)
-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 실시
 - ※ 의료기관에 설치한 학급(이하 '병원학교') 내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전담인력(특수교사 자격을 소지한 정규교사 등) 배치 및 순회교육 지원 등 교육 지원 강화
-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 순회교육 실시
 - ※ 일반학교 순회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통합교육지원실 설치·운영 확대

2)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능력, 장애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 작성·운영
 - ※ 【순회교육 수업일수】 매 학년도 150일 기준으로 각급학교장이 결정, 30일 범위 내에서 학생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지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감축 가능

- 순회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특성 및 교육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수업 지원을 학생당 주 3회 이상으로 확대 권장
- 순회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재구성, 지도 방법 및 가족지원 방법 등에 대한 연수 강화

시도교육청 협력 사항

- ① 순회교육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및 컨설팅 실시
- ② 순회학급에도 교재·교구 구입 등을 위한 학급 운영비 지원 및 담임 역할 수행

추진목적

-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강화를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소질과 재능 발굴 및 여가생활 다양화 도모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제14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동법「시행규칙」 제6조(최저학력의 기준 등) ▲「한국관광공사법」 제12조(사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1) 문화예술교육 지원 강화

- 1인 1문화예술교육, 특수교육대상학생 예술동아리 및 장애·비장애학생 통합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등을 통해 **질 높은 여가와 재능 발굴 기회 제공**
 - ※ 비장애학생과의 통합 문화예술 체험활동과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적극 지원
 - 문화예술행사(공연, 전시회 등),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예술 **국내외교류 활동**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 확대**로 **문화향유권 보장**
 - 관계부처 및 지역사회 문화예술 관계기관 연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체험 기회 제공**
 - ※ **【한국관광공사】**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장애학생) 문화관광체험 여행 지원 사업
 - 지역사회 문화예술 시설과 문화예술인의 재능기부 등을 활용한 **문화예술 체험 방안 마련 권장**
 - 시도교육청별 **문화예술 우수사례 발굴·보급**

참고 활동사례

- **(음악활동)** 오케스트라(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연합), 합창동아리, 전문가 초빙 기초 실기, 초청공연, 공연장 방문, 해외 공연 등
- **(미술활동)** 그림동아리, 작품 전시회, 교내대회 개최, 작가 초빙 전시회, 그림 대여 전시, 전문강사 연계 프로그램, 예술가와 함께하는 아트데이 등

2) 체육활동 지원 강화

- 체육 인재 발굴 기회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기관)* 연계체계 구축 및 협력 확대**
 - *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회, 관련 단체 및 해당 분야 전문가 등
 - **관계기관(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개발 자료 활용 및 장애·비장애학생 통합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적극 장려**
 - * 장애·비장애학생이 한 팀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스포츠(통합축구, 통합농구, 통합볼링 등)
 - ※ 각급 학교가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체육수업 교실 운영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 **미래 체육 인재 육성·발굴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체육 특기와 역량 발휘를 위한 기회 제공 확대**
 - 체육 진로 희망 학생을 위한 전문가 멘토링, 학습코칭 및 체육분야 진로 체험 등 **인재 발굴 프로그램 운영**
 - 체육 인재 발굴 기회 확대를 위한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 참여 적극 권장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기준은 학교의 장이 학업 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적용*** 가능(「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2024.10.18.)
 - * 기준 성적 하향 조정, 개별화교육계획 평가 결과 반영, 학생 개별 맞춤형 대체 과제 제시 등
- 체계적인 건강·체력 관리를 위한 **체력평가 및 회복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 학생 건강증진 도모**
 - 지역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체력 회복 콘텐츠(프로그램) 개발 및 스포츠 강습,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 지역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체력인증센터*(‘24. 20개소) 등과 연계·협력
 -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수원, 광주, 포천, 군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특수학교 체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스포츠강사 우선 배치 확대**
 - 교육청별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지역별 특색 있는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통합스포츠 운영학교 공모 등) **강화**

3)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도 능력 신장 교원 연수 강화

-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담당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험형 연수 확대
 - 통합체육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교사 연수* 및 수업 지원
 - * 【대한장애인체육회-국립특수교육원】 초·중등교사, 특수교사 대상 통합체육 연수 및 우수교사 해외연수
- 일반체육교사, 스포츠강사 대상 특수교육(장애이해교육, 특수체육 등) 관련 직무 연수 실시
 - ※ 스포츠강사 등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인력이 직무연수를 이수할 경우, 재채용 시 우대 권장

✔ 시도교육청 협력 사항

- ① 장애학생 체육인재 발굴을 위한 장애 관련 체육대회 적극 참여 지원
 - ② 교육청별 지역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한 체력회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③ 국립특수교육원과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협업하여 운영하는 통합체육 직무연수 과정에 초·중등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 ④ 관계기관(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관광공사 등)의 장애학생 지원 사업 적극 활용 및 홍보
 - ⑤ '손에 잡히는 PAPS-D 핸드북' 및 영상 활용 안내
- ※ 국립특수교육원 에듀에이블 및 유튜브 탑재 자료 참조

추진목적

- ▶ 중도중복장애, 시·청각장애, 건강장애 등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개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 ▶ 특수교육대상학생 의료적 지원 및 행동중재 등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지원 강화로 학생의 건강증진 및 안전한 학교 환경조성

1)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동법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별표(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22.6.)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 유형에 포함된 **중도중복장애 진단·평가 및 선정**
 - ※ '중도중복장애 등을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안내 자료' 참고('23.7.7.,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2761)
- **중도중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배치된 **특수학교 학급 및 각급 학교 특수학급은 1/2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 하향 조정 가능**
- 중도중복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 * 가상체험교육, 소규모 방과후활동, 교육과정 연계 맞춤형 재활복지 프로그램, 보조공학 관련 지원 등
- 교사 대상 **중도중복장애학생 지도 전문성 향상 연수 운영**
 - ※ 【국립특수교육원】 ▲중도중복장애학생의 이해와 지도(신규-원격연수)

2) 학교 내 의료적 지원 강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관련서비스)제9항,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기본이념),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동법 「시행령」 제23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시도교육청(학교)과 지역 의료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 등 협력체계 강화 지원**
 -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병·의원, 종합병원 등
- 학교 내 장애학생 의료적 지원을 위해 **교내 보건교사의 지원과 간호사 면허가 있는 의료 지원인력 배치·확대**

제도 개선 사항(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4948('22.9.8.), 725('24.2.28.) 참조)

• **교내 의료행위가 가능한 의료 지원인력의 범위 확대**

- ▶ (애로사항) 「의료법」상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 교내 배치에 한계
- ▶ (제도개선) 복지부 유권해석('22.3.17.)에 따라 간호사 보조수행 시 간호조무사도 의료 행위 가능

• **교내 의료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처리**

- ▶ (애로사항) 의료 지원인력의 교내 의료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주체 불명확
- ▶ (제도개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법률 검토 결과('22.8.4.)에 따라 교내 의료행위 중 사고 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 검토 가능

• **의료기관과의 계약 간소화**

- ▶ (애로사항) 교내 의료적 지원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절대 부족하며, 공익적인 관점에서 수요를 이끌어도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절차'에 대한 부담으로 계약 난항
- ▶ (제도개선)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제123회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22.8.31.)'에 따라 교육청(학교)에서 의료기관과 계약 시 수의계약 적용 검토 가능

• **학교 내 특수교육대상자 의료적 지원 근거 마련**

- ▶ (애로사항) 학교 내 간호사 배치 등 의료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미비로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대한 학교와 의료기관의 소극적 참여
- ▶ (제도개선) 「특수교육법」 제28조제9항 신설로 교육감(국립학교는 학교장)은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소속된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 가능 ('24.2.27. 공포, '25.2.28. 시행)

※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4.12.24.~) : 학교 내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적 지원 범위를 '흡인, 경관영양, 간헐적 도뇨, 인공호흡기 관리 및 교육감과 의료기관이 협의한 의료지원'으로 규정

○ 시도교육청은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 지원 계획 수립 및 치료지원 전담팀을 통한 학생 건강·안전 관련 컨설팅 제공

○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학교에서 지원 받는 의료적 지원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 (예) ▲가래흡인(석션) 지원 시간과 횟수 ▲섭식 지원 형태와 방법 ▲호흡 상태 ▲복용 약물 종류 및 방법 ▲의료적 지원 제공자 등

- 학생의 건강과 교육에 관한 정보 공유를 위해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에 의료 지원인력(의사, 간호사, 치료지원 등)의 참여와 소견 반영

○ 교내 의료 지원인력 대상 장애이해교육 등 전문 연수 운영

※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 의료인력의 학교 내 의료적 지원 역량 강화 연수

- 의료 지원인력을 통한 **교직원·보호자 대상 학생 건강관리 교육 실시**

참고 학교 내 장애학생 의료지원 참고자료

- 중증소아 돌봄제공자 교육매뉴얼('19.,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중도중복장애학생 의료적 지원 사업 운영 가이드북('21., 인천시교육청)
- 특수학교 학생 건강관리 매뉴얼('22., 서울시교육청, 서울대학교병원)
- 학교 내 장애학생 의료적 지원 가이드북('24., 서울시교육청, 교육부)

3)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제21조(통합교육)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한국수화언어법」 제11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시·청각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 및 대체학습 자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거점지원센터 설치·운영**
 - * (시각장애) 점자·확대문자(디지털 형태 포함) 등/(청각장애) 수어·자막 서비스 등
- 청능훈련, 보행훈련, 수어통역 및 점자지도 등이 가능한 **특수교육 전문인력을 우선 배치하여 권역별 거점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일반학교에 배치된 시·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지원을 위해 **거점지원센터로 운영 중인 시·청각장애 특수학교 지원* 확대**
 - * 통합교육 지원 전담교사 지정, 특수교사 전보제도 개선 등
- **시·청각장애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한 담당교원 역량 강화 연수*** 추진
 - * 한국수어, 점자보행 지도, 시·청각장애교육 이해, 피질(뇌성)시각장애학생 특수교육 지원 역량 강화 등
- 시각장애 학생 및 교사의 장애 정도와 요구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시각장애 대체자료* 제작·보급 지원**
 - * 【국립특수교육원】 대체 교과용도서, 학습참고서, EBS 수능 연계교재를 다양한 유형(점자, 확대, 데이지(DAISY) 등)으로 제작·보급
- **권역별 거점지원센터와 지역의 관계기관(장애인단체, 점자도서관, 수어통역센터 등)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통합교육 지원인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
- 시·청각장애학생의 의사소통 방법 및 교육자료 접근성, 교육환경 등 **교육 실태 파악 및 적절한 교육 지원* 강화**
 - * 수어·문자통역, 점자·확대 교재, 보조공학기기(FM 송수신기, 점자정보단말기 등) 지원

- 청각장애특수학교 한국수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원 수어 연수 및 학생 수어 교육 강화(「한국수화언어법」 제11조*)
 - *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 마련,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한 교육 및 한국수어를 통한 학습 지원
- 시청각장애(deaf-blind) 학생 평가 지원 자료집'(24., 광주광역시교육청 개발) 현장 확산 지원

4) 건강장애학생 지원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25조(순회교육 등)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원격 수업의 운영), 20조의3(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운영 중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

- 건강장애학생의 원인별 유형이나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병원학교 운영 및 담당교원 배치**
 - 시도교육청별 관내 의료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병원학교 추가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병원학교 설치·운영 **의료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 ※ 【한국교육개발원-국립특수교육원】 병원학교 및 스쿨포유(초등) 담당자 역량 강화
- 건강장애학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격수업 방안 마련** 및 위탁교육의 경우 **개학 이전 위탁교육기관에 위탁 여부 통보**
 - **(학적처리) 소속학교**(학생의 학적이 있는 학교)에서 **학적 처리**
 - **(출결) 소속학교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위탁교의 수업일수와 출결 내용을 합산하여 처리**
 -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의 출결은 해당 기관의 출결확인서를 따름
 - ※ 초등은 1일 1시간 이상 중등은 1일 2시간 이상 위탁교육기관 수업에 참여 시, 출석 인정
 - **(평가) 수행평가, 지필평가 등 평가 당일 소속 학교에 출석을 원칙**(병원학교 및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수업 대상자 등 포함)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시도교육청별 **건강장애학생의 학교 적응 및 학습격차 최소화**를 위한 **학교 복귀 프로그램 필수 운영**
 - ※ 건강장애학생의 소속학교 교원과 또래 친구를 포함하여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권장 (예: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학교 출석 체험 프로그램 등)

5)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제2호,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재활 및 발달 지원)

- 장애학생의 행동 문제에 대해 체계적 행동중재 지원을 위한 전문가 연계 강화 및 지원 환경 조성 확대
 - 전문적 지원체계 중심의 행동중재 지원을 위해 ‘**행동중재지원단***’ 운영 확대
 - * (구성) 교수, 의사, 치료사, 상담교사, 특수교육전문가, 행동분석 전문가, 학부모 등 (역할) 컨설팅, 교사 연수, 학부모(가족) 상담.교육, 팀 사례 회의 주관.참여, 상황별 진단을 통한 전문기관 연계, 가족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
 - 문제행동 진정, 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 및 장애학생의 행동특성에 따른 행동중재계획 실행을 위해 특수(일반)학교 내 심리안정 환경* 조성
 -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내 학생 안전, 심리·정서 안정 유지를 위해 감각통합 도구, 조명, 자극센서 등을 활용하여 구성한 대안적 공간(전용실 혹은 교실 내 영역으로 구성)

【 행동중재 지원 환경조성 사례 】

			
심리안정 환경 조성(쿠션, 안전매트 등)		장애학생 행동중재 실시 사례	

※ 출처: 행동중재 특별지원단 개별지원 사례(2022, 서울특별시교육청)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교원, 학부모의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특별연수(대학 연계 실습중심) 및 프로그램 운영
 - 대학 협력 실습 중심의 연수과정* 개발·운영, 민간자격 및 대학원 석·박사과정 등과 연계하여 양성 방안 다양화 등 전문성 제고
 - * (운영과정) 전문자격증 과정, 집중 연수과정 등, (운영방법) 권역별 거점 행동중재 지원 센터 연계, 대학 및 전문기관 위탁, 교육청 자체 추진 등
 - ※ 전문가 양성 과정 참여 대상 자격, 역할, 선정방법 등은 시도교육청의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 행동중재전문교사 양성 표준교육과정(안) 개발 예정('25)

참고 **행동중재 연수 및 지원 프로그램 사례**

- (서울) 특수·일반교원 대상으로 행동중재 연수과정 운영
- (부산) 행동중재 지원단이 일반·특수학교에 찾아가는 컨설팅 실시
- (대전) 특수교사 및 통합교사 대상 행동기술훈련(BST) 실시
- (경기) 지자체 기관과 연계한 가족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충남) 일반교사 대상 통합교육 연수과정에 행동중재 지원 역량 강화 포함
-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사의 긍정적 행동지원 역량 강화, 긍정적 행동지원(기초/심화) 등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특수학급) **행동중재 컨설팅 지원, 우수사례 발굴·확산**
 - ※ 개별·학교차원의 행동중재 지원 및 행동중재지원단 운영 사례 공유 등 전국 단위 행동중재 지원 워크숍 운영 예정('25.12.)
 - ※ 【국립특수교육원】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행동중재 지원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장애학생 행동중재 실행 가이드(원격연수)
- 가정-학교-사회에서 중재 일관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 강화**
 - 학교, 가정과 연계한 행동지원 방안 등 정보·상담 제공 및 자녀의 행동중재 지원을 위한 **학부모 역량 강화 지원, 가족(부모, 형제) 지원 프로그램 제공**



시도교육청 협력 사항

- ① '중도중복장애 등을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진단·평가 및 선정
- ② 시도교육청별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학교 수준(단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행·재정적 지원 강화
 -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반영
 - ※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중장기 교원 및 지원인력 수급 계획, 시설·설비 정비 및 확충, 교육과정 편성·운영 컨설팅 및 시범학교 운영 등
- ③ 시도교육청별 중도중복장애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④ 특수학교가 지역 의료기관, 대학 및 지역사회 관계기관 등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중심으로 업무협약 체결 등 의료적 지원 및 행동중재 연계망 구축 지원
- ⑤ 교내 의료인력, 병원학교 교원 대상 연수 운영(국립특수교육원) 안내 및 추천
- ⑥ 특수교사 및 유·초·중등교사의 국립특수교육원 연수 참여 안내
- ⑦ 행동중재 역량 강화 관련 연수에 특수교사 및 일반교사 대상으로 연수 참여를 안내하고, 사례 및 실습 중심으로 연수 운영
 - ※ 일반교원 대상 연수에 '장애학생 행동 특성 이해, 학교 및 개별 차원의 행동중재 지원'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
- ⑧ 시도교육청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행동중재 지원 분야) 운영 및 관리 계획 제출 ('25.월)
 - 시도교육청(시도특수교육원·특수교육지원센터 포함) 행동중재지원단 구성·운영 등을 통한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지원 사항(장애학생 행동중재 가이드라인('24.10.) 참고)
 - ※ 국가시책사업과 교육청 자체 사업이 함께 운영되는 경우 예산을 구분하여 함께 작성

추진목적

- ▶ 장애 특성 및 유형을 고려한 초등 늘봄학교 및 유치원·중등 방과후·돌봄 운영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인적 발달 및 부모의 사회 활동 참여 도모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제1항 제6호 ▲「특수교육법」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유아교육법」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국정과제 84】국가교육 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 복지시설) 및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지원)

1) 초등 늘봄학교 연차별 확대에 따른 지원체계 마련

- 초등 늘봄학교 확대 시행(‘25. 초1~2학년)에 따라 현장 중심 방문·점검·컨설팅 등 선제적 지원 체제 마련
 -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의 늘봄학교 참여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개설 운영 컨설팅(인력풀 및 지역자원 연계 지원 등)
 - 현장지원단 구성, 방학 및 학기별 운영 준비 상황 점검 및 지원* 추진
 - * ▲ 수요조사 현황, ▲공간 및 시설, ▲실무인력, ▲프로그램(강사 포함), ▲안전관리, ▲홍보·소통, ▲늘봄학교 행정업무 이관 등
-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 늘봄실무사 대상 늘봄 행정업무 이관 및 행정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늘봄학교 행정업무 이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 안내 및 점검
 - * 기존 특수교사가 담당하던 행정업무, 지원인력 지원 사항 등
 - ※ 초등학교 특수학급 늘봄학교 행정업무는 늘봄지원실에서 담당

참고 늘봄행정업무(예시)

▲ 수요조사 ▲ 운영계획 수립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강사 채용 관련 업무(채용 공고, 면접, 계약, 채용, 결과 보고, 강사 관리 등) ▲ 프로그램 평가 및 만족도 조사 ▲ 늘봄지원 인력 관리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등
 ※ 다만, 단위학교별 행정업무의 범위는 상이할 수 있음

1) 늘봄학교는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했던 단일체제로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프로그램

- 늘봄지원실과 특수교사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늘봄 학교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 (예시) 특수교육대상 학생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맞춤 프로그램 및 적합한 강사 추천 등
- 늘봄학교 전담체계 구축에 따라 특수학교 늘봄지원실장 배치·운영
 - 단, 사립 특수학교는 시도교육청 자체 재원을 마련하여 적정 직급(위) 행정인력 지원
- 늘봄허브²⁾ 내 교육청 개발 늘봄학교 프로그램 탑재 및 기관·개인 프로그램 검증을 위한 교육청별 검증 인력 편성 및 운영
 - 검증 인력은 방과후학교 관련 경험이 있는 특수교육 전문가로 심사풀을 구성하고 심사풀 내 위원은 3명 이상으로 심사팀 구성
 - 심사위원회에는 교육청별 ‘학교예산 편성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수당 지급 가능
 - ※ 검증위원회 운영 방식은 시도 여건에 따라 교육청 자체적으로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2) 수요자 요구를 고려한 프로그램 발굴·지원 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자체 또는 지역 내 자원 발굴·보급하여 초등 늘봄 학교, 유치원·중등 방과후학교·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를 지원
 - 특수학교(급)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학생, 보호자의 요구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학 중 통합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내 전문기관* 대학 등이 특색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협업하고 각 학교 필요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 (예시) 산림청 산림복지진흥원, 대한장애인체육회, 사피엔스 4.0 등
 - ** AI, SW, 음악, 미술, 체육 등 지역 특화 프로그램
 - ※ SW·AI 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시 디지털 적응도가 높은 예비교사를 자원봉사자, 보조강사 등으로 적극 활용

2) 안정적인 늘봄학교 프로그램 수요·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그램 수요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오픈마켓형(Open Market) 온라인 플랫폼

참고 장애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사례

-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하는 통합 돌봄프로그램(온오프라인 다다봄터) 운영(광주광역시교육청)
- 학교와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방과후활동 제공인력이 학교로 찾아가 학교 내 유휴 시설을 활용하여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 운영(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지역 소재 대학과 교육청 연계를 통해 대학의 자원(인력, 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장애 학생 대상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초등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특성과 흥미를 반영하여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및 비장애학생 통합 학교 적응 프로그램 운영(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3) 장애학생 맞춤 지원 강화

-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학교 및 방과후·돌봄 참여를 위한 **지원인력 지원 확대**
 - 시도교육청 여건 및 특수학교(급)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특수교육 지원인력, 보조강사, 시간제 인력 등 **다양한 인력풀 마련·지원**
 - 늘봄학교·방과후·돌봄 관계자 연수, 워크숍 개최 등 지역단위 **담당 인력 역량 강화** 추진
 - 장애학생 담당 강사 대상 **장애이해교육*** 실시, 장애학생 통합참여 지원을 위한 **방과후학교 컨설팅**** 등 지원
 - * 학교별 소속 장애학생의 장애를 공감하는 데 필요한 내용, 장애학생 지원(행동중재 등) 관련 내용 등을 포함
 - ** 장애유형에 따른 특성, 활동 구성 시 유의 사항, 통합참여를 위한 지원방안 등
- 장애 특성을 고려한 **환경 구성 및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 촉각·음성지원 등 장애유형·발달단계별 교재·교구 구비, 보조공학기기(스위치 등)
- **안전한 늘봄학교 및 방과후·돌봄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 **안전관리계획 수립**, 비상벨 설치, 문자서비스 운영, 행동중재 및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참고 장애학생 맞춤형 지원 사례

- 특수학교 맞춤형 돌봄 실현과 안전한 돌봄교실 운영을 위하여 학생 수(4~6명)를 고려하여 1실당 최대 2명의 돌봄지원인력 배치(부산광역시교육청)
-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보호 및 긴급상황 대처를 위하여 교무실-돌봄교실 연계 비상벨(긴급/보건 구분) 설치·운영(울산광역시교육청)

4) 지역사회 늘봄 및 방과후·돌봄기관 연계 확대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초등 늘봄학교 및 방과후교육 활성화 및 돌봄 해소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서비스원,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대학 등
-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프로그램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업 추진**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보건복지부)’ 등 **지역 내 돌봄 지원 사업 연계 확대**
 -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지역사회 돌봄기관**(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장애학생의 참여 여건 개선**
 - ※ 열악한 지역사회 돌봄기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장애학생의 경우 별도의 지원인력 추가 배치 등 지원인력 지원

참고 지역사회 연계 운영 사례

-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양질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서울특별시교육청)
 - * 장애인종합복지관, 한살림서울사회적협동조합 등 14개 기관
- 토요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학생의 소질과 재능을 살리는 교육 실현
 - ※ (대상) 초1~전공과, (장소) 특수학교, 체육센터, 시민운동장, 장애인부모회 활동서비스실 등
- 특수학교 내 공간이 부족한 경우, 학교 밖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장애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및 돌봄 운영(경기도교육청)
 - ※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방과후활동 기관 등 지역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위탁

✓ 시도교육청 협력 사항

- ①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시도교육청 주관 늘봄학교, 방과후 학교 및 방학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 ②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가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학교 연계형 제공기관 및 방과후활동 협력학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 ③ 늘봄학교 전담운영체제 구축에 따라 기존 초등학교 특수교사의 늘봄 행정업무도 늘봄지원실에서 담당하므로 이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점검(학기별)
- ④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장애학생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내 특수교육 지원 인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
 - ※ 늘봄학교는 '기존 방과후·돌봄 운영체계를 통합·개선한 단일체계'로서 근무시간 동안 지원인력의 업무 범위에 해당(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700(2018.8.6.) 참조)
- ⑤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초등 늘봄학교 및 유치원·중등 방과후·돌봄교실 운영 계획 수립 및 제출('25. 1월, 공문 안내)
- ⑥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학교 확대(초1~2학년)에 따라 '25학년도 준비상황 점검 및 컨설팅 추진
 - ※ (준비상황 점검) 1~2월 / 7~8월, (학기 초 컨설팅 지원) 3월, 9월
- ⑦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학교 운영 수요조사 및 준비상황 통계 조사
 - ※ 별도 안내
- ⑧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학교 및 방과후·돌봄 만족도 조사('25. 10월~11월)
- ⑨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학교, 방과후·돌봄 운영 현황 조사(학기별 1회)
- ⑩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학교, 유치원 및 중등 방과후·돌봄 우수사례 발굴·공유
 - ※ 2025년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 참가 협조(12월 개최)
- ⑪ 국·공·사립특수학교 늘봄지원실장 운영 계획 수립 및 제출('25.1월)
 - ※ 시도교육청은 사립 특수학교 늘봄지원실장 배치 지원
- ⑫ '늘봄허브' 프로그램 검증을 위한 특수교육 전문가를 중심으로 심사인력 구성 및 교육청 내 늘봄학교 소관부서와 협력체계 구축('25.1월)
- ⑬ 초등 늘봄학교, 방과후·돌봄 참여 시, 이동시간 전후 안전지도 체계 마련 추진
 - ※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
- ⑭ 늘봄학교 운영 관련 성과 공유('25. 12월, 별도 안내)

추진목적

-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두터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으로 교육 만족도 제고
- ▶ 각급학교의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강화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참여 보장

1)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동법 「시행령」 제25조(지원인력) ▲동법 「시행규칙」 제5조(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병역법 시행령」 제67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1)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관리 강화

-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업무 범위, 장애학생 지원방법 등에 대한 매뉴얼(시안) 마련을 통해 지원인력 관리·운영 지원
- 특수교육 지원인력 채용 시, 장애인 학대, 성범죄 등 범죄 이력 조사 등을 통해 자격조건 관리 강화
- 특수교육 지원인력에 대한 주기적 업무평가(근무성적평정 등)를 실시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근무(교류) 점진적 확대

참고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업무

-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제1항
 - ☞ 지원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 담당
 - ※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 등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도 특수교육 지원인력이 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활동'에 해당(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안내, 특수교육정책과-4022('18.8.20.))
- (주요업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과 학교 활동에 대해 보조역할 담당
 - ▶ (교수·학습활동 지원) 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 이동 지원, 교실과 운동장에서의 학생활동 지원, 학습자료 제작 지원 등
 - ▶ (개인 욕구 보조) 용변 및 식사지도 등 신변처리, 보조기 착용, 의복 착탈의, 건강 보호 등 안정된 학교생활을 위한 지원 활동
 - ▶ (학교 적응 지원) 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 행동 관리 지원, 또래와의 관계 형성 지원, 행동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 등

[2]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

-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장애학생 교육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에 관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확대**
 - * (연수내용) 장애학생 인권보호, 장애유형별 일상생활 지원 방법, 복무규정 등
 - ※ 【국립특수교육원】 사회복무요원 장애학생 활동지원 역량 강화(신규-원격연수)
- (신규 인력) 직무연수 30시간 이상 의무 실시*
 - * 채용일로부터 1주일 이내 직무연수 실시
- (기존 인력) 교육청 또는 학교 단위에서 직무교육 강화(연 15시간 이상)

[3]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교육 강화

- 사회복무요원의 전공과 적성,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 성별(남학생 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치**

참고 사회복무요원 관련 규정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사회복무요원의 전공과 적성 고려한 배치**
 - ▶ 제25조(특정 자격·전공자등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 지정) 지방병무청장은 「별표 4」의 복무기관의 복무분야에 대한 소집통지를 할 경우 그 소집 월의 통지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별표 4」의 소집순위에 구체적으로 밝힌 자격·면허소지자, 관련학과 전공자를 직권으로 선발하여 해당 복무기관의 복무분야에 소집 통지할 수 있다.
 - ▶ [별표4] 특정자격·전공자 등 소집 순위: 장애학생 활동 지원 분야
 - (1순위) 특수교육 등 관련학과 전공자 또는 자격 취득자
 - (2순위) 교대·사범대 재학 및 졸업자, 교사 자격 취득자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장애학생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재배치 금지**
 - ▶ 제35조(복무기관 재지정) 제10항: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이하 이 항에서 "복무기관"이라 한다)로 재지정 할 수 없으며, ...
 - 5. 장애학생 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특수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지원)청

- 장애학생 활동지원 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내실화**
 - (신규요원) 시도교육청별 **16시간 이상 직무교육 실시**(배치 3개월 이내)
 - (기존요원) 학교에서 **연 2회 이상 직무교육**(장애인권·직무역량 교육 등) 실시
 - ※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활동지원 분야 사회복무요원 전문성 강화(신규-원격연수)

참고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실시 근거와 내용

•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실시 관련 근거

- ▶ 「병역법」 제33조의2(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 ▶ 「병역법 시행령」 제67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 장애학생 활동 지원 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내용

- ▶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직무교육과정(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장애 인권교육과 장애학생 활동지원 업무*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
-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별표1] 사회복무요원 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등
- (세부과업) 학습활동, 일상생활지원, 보행 및 이동 지원, 운동 및 재활 지원, 차량 승하차 지도·식사 등

2) 치료지원 내실화

▲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동법 「시행령」 제24조(치료지원), 제29조(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치료지원 지원 강화
 - 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과 성장 과정에서의 발달 변화에 따라 교육적 요구를 파악하여 학생에게 필요한 치료지원 영역*을 선정하여 제공

* 치료지원 영역은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으로 하고, 기타 영역(언어·청능훈련,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등)은 관련서비스로 규정하여 지원

- 치료지원 서비스 격차 완화 및 질 관리를 위한 여건 개선

- 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 기관 등과 협력을 통한 **지역 인프라 확장**
- 시도교육청별 치료지원 제공기관 점검을 통해 **지원 영역의 적절성 평가 실시**

- 치료지원 제공기관별 치료지원 대상자의 장애유형·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기 행정점검 실시(연 1회 이상)**

- 치료지원 대상자의 치료지원 내용, 방법, 발달사항에 대한 기록 관리 철저

3)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9]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5조(안전 및 편의 시설·설비의 종류 및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 시도교육청은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장애학생의 평가조정 규정을 마련하여 학생이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각급학교는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평가조정* 규정을 정하여 시행
 - * 평가의 본래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항의 제시 형태, 반응 형태, 검사 시간, 검사 환경 등을 조정하는 것과 같이 평가 전·중·후에 이루어지는 일체의 노력
 - ※ '장애학생 평가조정 매뉴얼(2016, 국립특수교육원)' 참고
 - 평가조정으로도 학교 단위 평가에 참여가 어려운 장애학생을 위한 평가 지원 방안 강구
 - ※ (참고) 중·고등학교 장애학생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도움자료('21., 교육부)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학 편의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 통학차량* 및 통학비 지원, 통학 지원인력 배치 등 통학지원 강화
 - * 특수학교 통학차량 운영 시 통학차량 신고(「도로교통법」 제52조), 동승보호자 탑승 등 안전조치(동법 제53조), 운전자·운전자·동승보호자의 안전교육 이수(동법 제53조의3)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현장체험활동, 수련회 등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 이동 등 편의 제공
- 각급학교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제고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담당자 교육** 및 실태점검 철저
 - * 【적정 설치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설치기준을 전부 충족하여 설치한 비율
 - 【단순 설치율】 해당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설치기준에 미달한 비율
 - **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 편의시설의 이해(원격),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 공무원 전문교육(집합/원격)에 적극 참여 권장
 -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결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하여 예산 확보 등을 포함한 개선계획 수립·시행

- 적정·단순 설치율 50% 이하인 유·초·중·고·특수학교는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후속조치 결과 관리('25.3., '25.9.)
- 특수교육기관-지역 보조기기센터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학교 방문형 '찾아가는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 * 보조기기 수리·세척, 교직원 및 장애학생 대상 보조기기 활용 교육 등
- 시도교육청과 지역 보조기기센터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보조기기 상담 및 대여 등) 운영 확대
 - * 보조기기 수리·세척, 교직원 및 장애학생 대상 보조기기 활용 교육 등

✔ 시도교육청 협력 사항

- ①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확대, 복무 관리 및 연수 등 운영 관리 철저
 -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매뉴얼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시도협의체 운영 협조
- ② 사회복지요원 배치·관리 및 교육 강화
 - 사회복지요원은 남학생을 담당하도록 배치하여 여학생 지원에 따른 민원 발생 예방
 - 사회복지요원 배치 관련 규정 준수 확인 철저
 - ※ 「사회복지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4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지정 제한) 확인
 - 특수학교 배치 사회복지요원 대상 병무청 복무지도관의 현장 점검(연 2회)
 - 신규 배치 사회복지요원의 업무 적응을 위해 국립특수교육원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학교 차원의 직무교육보다는, 교육(지원)청 차원의 직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③ 치료지원 제공기관에 대한 행정지도를 자체 계획에 의거 실시(연 1회 이상)
 - 치료지원 및 관련서비스 제공 현황 조사 실시(연 1회)
- ④ '찾아가는 보조기기 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교육청의 경우, 지역보조기기센터와 연계하여 학교 지원 및 운영모델 창출
- ⑤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수요 파악을 위한 시도교육청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 학교를 우선하여 연차별 개선계획 수립, 예산 확보 및 개·보수 추진
- 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정보공시 안내('25.5월)
- ⑦ 각급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전수조사 결과 제출('25.11월)

추진목적

- 특수학교(급) 안전교육 및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 의식 고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학생 안전교육), 제4조(교직원 등 안전교육)

1) 특수교육대상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 특수학교의 학교교육계획에 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 ※ 통학로에 특수교육대상학생 보호 인력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자기 보호 능력 계발을 위한 교육 계획 등 포함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통학 환경 개선(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등)

2)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 안전교육 실시

- 재난 상황별(교통사고·화재·지진 등) 실질적* 안전 대피 훈련 실시
 - * 해당 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과 정도,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훈련 실시
 - ※ 소방서, 경찰서 등 지역 관계기관과 연계한 안전 훈련 실시 권장
- 안전 대피 훈련으로 파악한 재난 상황별 취약 요인 분석 및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하여 학교 단위 재난 대응 매뉴얼 정비

참고 안전교육 참고 자료

- 장애학생을 위한 재난대응 매뉴얼('16., 교육부, 경상남도특수교육원)
- 【교육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정보센터(www.schoolsafe.kr)
-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3)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시도교육청별 특수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점검 강화
 -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안전점검의 실시·결과 보고 등)에 따라 안전점검 연 2회 이상 실시
 - ※ 학교시설 안전관리 기준 미달 특수학교는 시설 연간 정비계획 수립·시행

- 학교별 학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시행**
 - 학교 내 감염병 관리조직 구성, 단체사고 및 집단 감염 예방·관리 철저
 - ※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안내, 환기·소독실시 등
- 특수학교(급)의 **노후된 시설 개선 및 취약지역 CCTV 설치 확대**
- 특수학교 **재난위험 시설 해소 및 소방안전시설 개선 지원**
-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특수학교에 간이체육시설, 체육관 등 설치를 지원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건강 피해 예방

4) 학교 주변 위험환경 개선 노력 지속

- 학교보건 등 관련 부서 및 지자체와 협조하여 공단지역 악취·소음·먼지 등 피해, 송전탑 설치 지역 등 학교 주변 위험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 마련

시도교육청 협력 사항

- ① 장애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 특수학교와 관할 경찰서, 소방서 간 협의체 운영 지원
- ②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년별 안전교육(교육시간, 안전교육 내용 및 방법 등) 및 교직원 등에 대한 학기별 안전교육 실시 결과 보고
- ③ 단체사고 및 집단 감염병 발생 시 보고 철저
- ④ 특수학교(급) 노후시설 및 수업환경 개선 추진
- ⑤ 수련활동, 체험학습 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참여에 제한이 없도록 지원인력 배치 등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참여 방안 및 안전대책을 기본 계획에 포함하여 마련

추진목적

- ▶ 특수교육대상학생 미래생활 역량(자립생활 및 직업재활 역량 등) 강화
- ▶ 개인의 진로 희망에 따른 사회 참여 기회(진학, 취업, 평생교육 참여 등) 확대

▲「특수교육법」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제24조(전공과의 설치·운영) ▲「산학협력법」 제2조(정의), 제36조(학교기업) ▲「직업교육훈련법」 제7조(현장실습), 제25조(지도·점검) ▲「산재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진로교육법」 제9조(진로전담교사)

1) 지역 기반 진로·직업교육 연계 강화

○ 교육과정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다양한 현장 중심 진로·직업 교육과정 및 학교급 간 연계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 맞춤 진로설계 지원
 -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진로연계교육 ▲직업교육 중점학교 ▲특수학교 학교기업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문화·예술분야, 지역 내 특화 산업분야 연계 특화 교육과정 등

○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 강화

- 시도교육청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역사회 중심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 협의체*를 운영하여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지원 강화
 - * 특수교육기관, 장애인 취업지원 관계기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지역 내 산업체 등으로 구성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담당자 전문성 제고를 통한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담당자 워크숍, 현장 컨설팅 등 운영('25.4.~12.)

○ 지역사회 연계 전공과 과정 운영

- 지역 대학 등과 연계한 전공과 과정을 운영하여 전문적인 직업훈련 지원 및 장애학생 맞춤 직업교육 제공
 - ※ 대학 내 특정 학과와 연계하여 전문교과 및 교양교과를 이수하고, 대학 내 실습실 및 캠퍼스 편의시설 등 인적·물적 인프라 적극 활용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지원
 - 시도교육청 및 특수학교 진로·직업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추진('25.下.예정)
 -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운영 사례 공유 및 역량 강화 연수 추진('25.下.예정)
-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운영 내실화
 -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에 따른 시도교육청 인사규정 정비
 -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교사 연구회 및 연수 운영 권장
- 고교 장애학생 대상 대학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추진
 - * 전공·교양 수업 체험, 진학 정보제공 및 컨설팅, 부대시설 이용 등(시도교육청-대학 협력)

2) 관계부처(기관) 협력 취업지원 확대

-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정부·공공기관·지자체 등의 일자리 사업*(취업 지원 프로그램 포함)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업 강화를 통한 현장실습 지원
 - * ▲학교 내 일자리사업 ▲대학 및 공공기관 일자리사업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일자리사업 등
 - 특수교육대상학생 취업지원 서비스 적시 제공 및 이력 관리를 위해 범부처(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장애학생 진로취업지원 시스템' 운영
 -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 체계 고도화 모델 개발('25. 경상남도교육청)
 - 학교 내 일자리 사업을 통한 지역 취업사례를 지속 발굴하여 대학,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운영 내실화
 - 특수교육대상자 현장실습 운영 방안을 참고하여, 시도교육청별 자체 현장실습 운영 지침 마련 및 현장 지원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 현장실습 사전교육 콘텐츠* 보급을 통해 학생 특성 및 수준을 고려한 현장중심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추진
 - * 산업 직종별 현장실습 교육자료 개발·보급('24. 인천광역시교육청)

✔ 시도교육청 협력 사항

- ① 시도교육청별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운영계획' 수립('25.3월)
 - 시도교육청별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및 교육청 차원의 특수학교 학교기업과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지원, '학교·공공기관·대학 내 일자리',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일자리' 등 일자리 사업 추진 계획 포함하여 수립
- ② 장애학생 진로·직업 이력 관리를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장애학생 진로 취업지원 시스템' 활용 안내('25.3월)
- ③ 시도교육청별 장애학생 현장실습 운영·점검 철저('25.4~11월) 및 결과 제출('25.12월)
- ④ 고교 장애학생 대상 대학 생활 체험 지원 사업 운영('25.~)

IV.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IV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1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체계 강화

추진목적

- ▶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

▲ 「특수교육법」 제29조(특별지원위원회),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제30조의2(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제31조(편의제공 등), 제32조(학칙 등의 작성), 제33조(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1)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기반 조성

-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운영*('24.1.~) 및 관계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 강화**
 - * (주요 업무)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교육지원인력, 보조기기 등), 장애학생 고등교육 관련 연구·분석, 자료개발 및 보급, 장애학생 진로취업 지원 등
-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을 확대*하고, 장애학생의 진로·취업 등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추진
 - * ('22.) 8교 → ('24.) 10교 → ('26.) 14교
-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안내자료 제작·배포**,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전문성 강화 유도**

2) 장애학생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

-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학생의 학습에 필요한 **지원인력(일반·전문)과 보조기기 등 지원**
-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사업안내 리플릿 제작, **대입박람회** 및 **누리집**을 통한 **홍보** 등 장애대학(원)생 지원 정책 안내

2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

추진목적

- ▶ 양질의 장애인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통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역량 제고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5조의2(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제19조의2(국가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제19조의3(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제20조의2(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제21조의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 제11조의3(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제12조의6(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국정과제 84-3】 교육 약자와 동행하는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국정과제 84-5】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

1)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확대를 통한 지역단위 활성화 기반 조성

- 지역 중심의 교육 기반 구축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지원 확대*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현황(누적) : ('22) 32개 → ('23) 70개 → ('24) 82개 → ('25) 88개

- 지역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보고회(매년 하반기) 등을 통한 지역단위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우수 운영 모델 확산

2)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 촉진

- 장애인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원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용권 지원('24. 9,000명 → '25. 12,000명 목표)

3) 다양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확산

-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하여 평생교육 7대 영역* 중 1개 영역에 대한 연차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① 학력보완, ② 기초문해, ③ 직업능력, ④ 인문교양, ⑤ 문화예술, ⑥ 시민참여, ⑦ 성인진로

- 장애학습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과정 개발·보급

※ ('24) 기초연구 → ('25) 과정 개발 연구 → ('26) 과정 개발 → ('27) 과정 개발

4) 장애인 평생교육 통계 기반 강화

- '2026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예비조사)'를 통해 조사 방법 및 조사 문항 개선 등 현황조사 도구(안) 확정

- 전수조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및 장애학습자 참여 조사(면담조사) 병행 실시로 통계 신뢰도 강화

5)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역량 제고

-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기관설치·운영자, 교·강사 등) 양성 프로그램 및 연수를 통한 전문성 강화 및 장애인 이해·공감문화 형성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연 1시간 이상)
 - ※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결과는 매년 연말에 수합(예정)

참고 2025년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연수 현황

구분	프로그램
1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인권 역량 강화 과정
2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역량 강화 과정
3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역량 강화 과정
4	공무원 등 평생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과정
5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담당자 역량 강화 과정

✓ 시도교육청 협력 사항

- ① 대학 진학 희망 학생 대상 진로 상담 지원 및 입학전형 등 관련 정보제공 지원(상시)
- ②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확대
- ③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 대상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안내(연 1시간 이상)
- ④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 협조
- ⑤ 유·초·중·고등학교 및 시군구 평생학습관 및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⑥ 시도교육청과 지자체 간 유기적 연계·협조 체제 구축

**V. 2025년도 특수교육 관련 행사
및 기타 행정사항**

1

특수교육 관련 행사

1) 2025년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 일시: 2025. 5. 13. ~ 5. 16.
- 장소: 경상남도(김해종합운동장 및 경남 일원, / 주 개최지: 김해시)
- 주최: 대한장애인체육회
- 주관: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국민체육진흥공단
- 경기종목: 골볼, 보치아, 수영, 씨름, 육상, e스포츠 및 실내조정 등 17종목(예정)
- 참가 대상: 전국 장애학생(초등학교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 특수교육교원 등

2) 2025년 전국 장애영유아교육 워크숍

- 일시: 7월경(예정, 상세 일정은 추후 안내)
- 장소: 제주도(예정)
- 주최: 교육부
- 주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주요 내용: 장애영유아 교육과정 우수사례 발굴 및 유치원 운영 사례 공유 등
- 참가 대상: 특수교육교원, 시도교육청 및 관계기관 담당자 등

3) 2025년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 일시: 2025. 9. 9. ~ 9. 10.
- 장소: 소노캄 비발디파크(강원도 홍천)
- 주최: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넷마블문화재단
- 후원: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 주요 내용: 정보경진대회, e스포츠대회, 체험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등
- 참가 대상: 특수학교(급) 학생, 일반학생,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시도교육청 및 관계기관 담당자 등

4) 2025년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 경진대회

- 일시: 10월경(예정, 상세 일정은 추후 안내)
- 장소: 부산광역시(예정)
- 주최: 교육부
- 주관: 부산광역시교육청
- 대상 영역: 감각장애(시각·청각·지체장애)
- 참가 대상: 전국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과정 시각·청각·지체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

1) 2025년 특수교육통계 조사 실시

- 대상: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재학 중인 일반 학교 및 각종학교
- 시기: 2025. 4.
- 내용: 특수교육 관련 주요 현황(특수교육대상학생, 특수교육 기관 및 교원 등)
- 방법: 나이스 통계 자료 입력 및 점검(※ 제출 기한 준수)
- 제출처: 국립특수교육원

2) 2025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실시

- 대상: 특수교육대상학생(초4~전공과), 보호자, 교원
- 기간: 2025. 4. ~ 9.(예정)
- 내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관한 사항
- 방법: 조사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조사 및 대면조사
- 주관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 수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2025년 특수교육 실태조사 예비조사 실시

- 대상: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재학 일반학교 등(1개 교육청 선정 예정)
- 기간: 2025. 5. ~ 10.(예정)
- 내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8조(실태조사)에 관한 조사 사항
- 방법: 조사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및 대면조사, 패널을 통한 종단조사
- 주관: 국립특수교육원

4) 기초학습능력검사 개발 예비검사 실시

- 대상: 유·초·중학교 학생 1,200명 표집(예정)
- 기간: 2025. 5. ~ 10.(예정)
- 내용: 읽기, 쓰기, 수학 등 검사 영역
- 방법: 대면검사
- 주관: 국립특수교육원

5) 2025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작성 자료 제출

- 대상: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 시기: 2025. 6.
- 내용: 특수교육 관련 현황(※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국회 제출)
- 방법: 엑셀 서식 자료 입력 및 점검(※ 제출 기한 준수)
- 제출처: 국립특수교육원